

구미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2.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개정이유

- 보건복지부 훈령 제29호(2011.12.16)로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미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에 포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제명 변경
「구미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
→ 「구미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 기구명칭인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보건진료소”를 추가(안 제1조, 안 제2조)
- 개정된 법령 제명 반영(안 제3조, 안 제5조)
- 기존 진료비 및 수수료의 당일납부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
당일 납부에서 익일 납부(단, 보건진료소의 경우 5일 이내 납부)로 개정함.(안 제9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구미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구미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를 “구미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해”를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로, “보건지소의운영 및 진료비·수수료 징수등에 관하여”를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의 운영과 진료비·수수료 및 약가(이하 “진료비등”이라 한다)의 징수 등에”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진료비등)”을 “(진료비등의 징수)”로 하고, 같은 조 중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로, “받은자로 부터 진료비를”을 “받은 자로부터 진료비등을”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한다.

제4조 본문 중 “의료보험 약가기준표액에 의하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

한금액표」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동 약가기준액표”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로, “원의약품의 비용은 당해”를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타법령에 의한 수가)”를 “(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로 하고, 같은 조 중 “의료보험법등”을 “「의료급여법」 등”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기타 수가)”를 “(그 밖의 수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료보험”을 “국민건강보험”으로, “의치,보철등”을 “의치, 보철 등”으로, “별도”를 “ 따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를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별표]에 의거”를 “별표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보건복지부령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등을 요하는”을 “등이 필요한”으로,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를 “따른 소정의 진료수가를 더한다.”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사용료 또는 수수료 감면)”을 “(진료비등의 감면 및 납기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할때”를 “할 때”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진료비등 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등 수납금은 그 다음날까지 납부한

다. 단 보건진료소의 경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중 “진료비를 감면 받은자”를 “진료비등을 감면 받은 자”로 한다.

제1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진료비등의 납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구미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	구미시 보건소 · 보건지소 및 보건 진료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역보건 법 제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보건소 및 보건지 소의운영 및 진료비·수수료 징 수등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지역보 건법</u> 」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 <u>보건지소와</u> 「 <u>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u> 」 제15조에 따라 설 치된 <u>보건진료소의 운영과 진료 비·수수료 및 약가(이하 “진 료비등”이라 한다)의 징수 등</u> <u>에</u> ----- -----.
제2조(<u>진료비등</u>) <u>보건소 및 보건 지소의 시설 또는 장비를 이용 하거나 진료를 받은자로 부터</u> <u>진료비를</u> 징수할 수 있다.	제2조(<u>진료비등의 징수</u>) <u>보건소,</u> <u>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u> ----- ----- --- <u>받은 자로부터 진료비등을</u> -----.
제3조(<u>진료수가</u>) <u>진료수는 보 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의료보험 진료수 가 기준액을 적용 징수한다.</u>	제3조(<u>진료수가</u>) <u>진료수는 보 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 험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고 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의 내역」을 적용한다.</u>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 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u>의료보험</u>	제4조(약가) ----- ----- <u>보건복</u>

약가기준표액에 의하여 산정하
되 10원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 약가기준액
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
품 및 원의약품의 비용은 당해
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
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
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
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
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제6조(기타 수가) ①의료보험 진
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보철등에 소요되는 비용
은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수질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

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
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
에 따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
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따
라 -----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 원료의약품의 비
용은 해당 -----

-----.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의료급여법」 등 -----
- 따른 -----
-----.

제6조(그 밖의 수가) ①국민건강
보험 -----
----- 의치, 보철 등-----
----- 따
로 -----.

②-----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

및운영조례”에 규정한 검사수수료를 준용한다.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①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에 의거 징수한다. 다만, 위생분야 종사자들의 건강진단서 수수료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사 및 병리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제8조(사용료 또는 수수료 감면)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때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등 비용을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진료비등 납부) 진료비 또는 수수료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제10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 받은자에 대하여

영조례」-----
-----.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 별표에 따라 -----
다만,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보건복지부령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따른 -----

----- 등이 필요한 ----- 따른 소정의 진료수가를 더한다.

제8조(진료비등의 감면 및 납기연장) -----
할 때 -----

-----.

제9조(진료비등 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등 수납금은 그 다음날까지 납부한다. 단 보건진료소는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추징) -----
진료비등을 감면 받은 자-----

는 이를 추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시행규칙) ----- 시행
에 -----
----.

관련법령

□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① 시장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을 말하며, 읍·면지역에서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군수는 의료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시·구의 관할구역안의 도서지역에는 당해 시장·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군지역안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행정구역이 행정구역의 변경등에 의하여 시 또는 구지역으로 편입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장 또는 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4.12.22, 1997.12.13, 2008.2.29, 2010.1.18>

②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보건진료소의 설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구미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진료비)의 법령에 의해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1년 보건진료소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세입은 12개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으로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진료비)에 의하며, 세출은 12개 보건진료소 일반운영비, 보건사업비, 의료및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보건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액

(단위: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진료수입	521,878	521,878	521,878	521,878	521,878	2,609,390
	소계(a)	521,878	521,878	521,878	521,878	521,878	2,609,390
세출	일반운영비	132,877	132,877	132,877	132,877	132,877	664,385
	보건사업비	150,480	150,480	150,480	150,480	150,480	752,400
	의료및구료비	158,411	158,411	158,411	158,411	158,411	792,055
	시설비및부대비	16,822	16,822	16,822	16,822	16,822	84,110
	자산취득비	97,919	97,919	97,919	97,919	97,919	489,595
	인건비	31,480	31,480	31,480	31,480	31,480	157,400
	소계	587,989	587,989	587,989	587,989	587,989	2,939,945
총 비용(a-b)		-66,111	-66,111	-66,111	-66,111	-66,111	-330,555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도 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시·군비		66,111	66,111	66,111	66,111	66,111	330,555
민간							
기타							
합계		66,111	66,111	66,111	66,111	66,111	330,555

5. 부대의견

- 세입(진료수입) 및 세출예산(진료소 운영비)은 추정비로서 여건에 따라 변동이 발생할 경우 재정소요액도 변동이 생길 수 있음.

6. 작성자

- 선산보건소 배민정(480-4121)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세입 예산

(단위 : 천원)

구분	서부	대방	구운	연악	덕촌	구봉	가산	다곡	낙산	임봉	송백	금산	합계
진료수입	32,511	47,646	73,713	37,118	60,392	41,793	50,875	43,340	23,679	54,321	29,763	26,727	521,878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분	일반운영비	보건사업비	의료 및 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인건비	합계
서부	9,095	12,100	8,998	0	5,282	2,640	38,115
대방	12,830	13,575	10,996	2,932	4,726	2,640	47,699
구운	11,209	13,970	24,653	1,104	4,623	2,640	58,199
연악	10,628	10,463	12,701	210	11,682	2,640	48,324
덕춘	9,738	1,2440	15,583	830	34,520	2,640	75,751
구봉	14,748	16,148	14,234	946	5,480	2,640	54,196
가산	11,520	16,975	15,073	380	2,345	2,440	48,733
다곡	10,452	9,084	13,402	245	7,959	2,640	43,782
낙산	11,390	5,589	9,040	840	6,319	2,640	35,818
임봉	12,087	23,882	19,948	8,675	3,740	2,640	70,972
송백	11,197	8,659	5,558	440	1,860	2,640	30,354
금산	7,983	7,595	8225	220	9,383	2,640	36,046
계	132,877	150,480	158,411	16,822	97,919	31,480	587,989